



조선산업에서의 산업 재산권

황 인 환 <대우 선박해양기술연구소>

I. 서 언

불모지나 다름없던 우리의 조선산업이 질·양적으로 눈부시게 성장하여 세계시장에서 일본과 함께 선두경쟁을 벌이고 있는 시점에서 지적하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문제점이 있다.

WTO 출범과 UR등 급변하는 세계경제 환경속에서 선진 각국의 산업재산권을 무기로한 분쟁 사례는 보기 드문일이 아니며 보편화된 국제적 추세로 자리잡고 있다. 이미 상당한 기술개발로 다수의 산업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외국경쟁사들은 이러한 산업재산권을 무기로 상대적으로 기술적 열세에 있는 국내조선업계에 적지않은 위협이 되고 있다는 사실 또한 주지하고 있는 바이다.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기술 개발없이 수많은 조선인들의 피와 땀으로 단기간에 이룩한 우리 조선산업의 현실에서 이러한 산업재산권의 문제는 국제 경쟁력 제고라는 공동의 과제와 맞물려 우리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이다.

따라서 조선산업에 있어서 산업재산권 보호의 개념을 살피고 기술개발과 특허관리의 중요성을 환기시키는것은 의미있는 일이라 하겠다.

II. 산업재산권의 개념

기술에 대한 개념의 변화에 따라 산업재산권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산업재산권에 대한 개념을 “산업의 국제 경쟁력에 대체적으로 영향을 주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기술적 사항”

으로 인식되어왔던 종래의 사고에서 “자국의 무역수지 및 국제 경쟁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무역상의 문제”로 재정립하는 인식의 전환이 요구되는 때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산업재산권 보호는 지적 창작물에 대한 독점적 경제 이윤의 보장을 의미하며 또한 불법적 사용의 금지이기도 하다. 즉 산업재산권 보호는 기술개발과 이용 발명을 장려하는 중요한 경제정책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조선산업은 선진기술의 모방이나 역공학을 통한 이용 발명에 상대적으로 많은 노력이 집중되고 있어 작금의 국제적인 기술보호주의 하에서 점차 기술 기반이 취약해지고 있는 실정으로 기술이전등을 통한 첨단기술 개발로의 접목을 강화하고 여기서 파생되는 이용 발명의 권리 확보를 가능한 한 많이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에 자체적 기술개발을 통한 지적 재산권 확보의 필요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와같은 노력으로 경쟁국의 기술보호범위 확대와 이로 인한 Royalty 지급부담의 가중, 국내 R&D 투자 기회비용 상승등의 파급효과를 최소화 해야 할 것이다.

III. 조선업계의 산업재산권 현황

대표적인 노동집약 산업으로 분류되고 있는 조선산업은 점차 기술집약 산업으로의 변천과정에 있다고는 하지만 첨단 기술집약 산업이라 할 수 있는 전기, 전자, 자동차 산업등에 비해 산업재산권의 양이나 질적 규모가 현저하게 적을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업종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특히 국내 조선사의 실적은 경쟁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극히 빈약한 실정으로 업무 종사자는 물론 경영층에 이르기까지 산업재산권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제도의 개선이 요구된다.

〈표1〉은 최근 5년간 국내조선사 및 일본조선사간 특허 (실용신안 포함 : 공개기준) 출원실적 및 추이를 비교한 자료이다. 한국은 '94년을 정점으로, 일본은 '92년을 정점으로 각각 하강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같은 기간 동안 한국의 실적은 일본의 3% 수준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물론 건수위주의 단순비교로 우열을 가릴 논리적 근거는 없지만 각종 지표에서 보듯이 우리 조선업계의 산업재산권에 대한 인식이나 수준이 그다지 높지않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상당기간 양적

팽창을 지향하고 이를 자연스럽게 질적 수준의 향상으로 유도하는 적극적인 관리와 충분한 보상제도 등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IV. 산업재산권 분쟁 및 대응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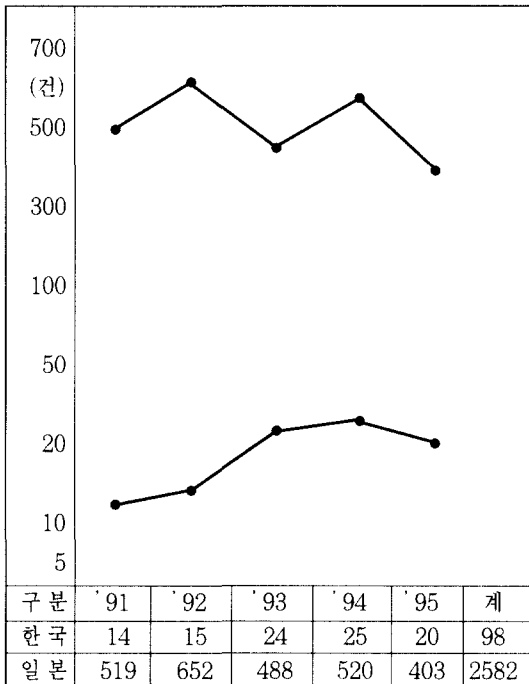
산업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많이 높아지고는 있으나 아직도 미흡한 상황이고 이러한 틈을 타 외국의 경쟁사들에 의한 국내 특허 출원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이중에는 권리를 받을 수 없는 것들도 많이 있다.

일본 IHI사의 '특허 83-4645호 : 유조선'에 대한 공고 결정은 그 대표적 사례로 이미 일본 특허청에서 진보성의 문제로 거절 사정된 발명사항으로 국내 출원을 시도, 공고결정을 받았으나, 국내 조선4사가 공고 내용을 면밀히 분석, 공동 대처하므로써 다행히 거절사정 시킨바 있다.

또한 미국의 석유 Major중의 하나인 Chevron사가 미국 및 브라질에 특허권 등록을 필하고 한국, 일본 등에 특허출원(국내 출원번호 7283 : '91.5)하여 심사청구('96.5)한 '이중선체를 위한 발라스트 탱크'는 신규제정된 국제 규정중 '유조선의 이중선체 의무화 규정'에 따른 유조선 설계시 탱크의 일반 배치와 관련하여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 기술사항으로 국내 조선사에서 이미 본 특허범위에 해당되는 기술을 적용하여 선박을 건조, 인도했거나 향후에도 필연적으로 본 특허개념의 적용이 요구되는 기술이다.

이에 국내 조선 3사가 공동으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공동대처중에 있는 등 국내업체와 외국업체간의 국제 특허분쟁이 하나 둘씩 발생되고 있으며 이러한 분쟁은 빠른 속도로 그 빈도와 충격이 증가될 전망이다. 이와 같은 외국 선진 조선사들의 산업재산권을 무기로한 침해와 분쟁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 국내 조선업계에서는 '조선 특허소위원회'를 결성,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그들의 기술개발동향과 상호 정보를 교환하고 있으나 회원사간의 이해관계나 인식 및 환경의 차이 등으로 활동이 소극적이어서 이에 전적으로 의

표 1. 한·일 조선사간 특허 출원동향 비교



* 실용신안 포함
* 공개기준
* Kiniti-IR 인용



존하기에는 미흡한 실정인바 이를 시급히 보완하고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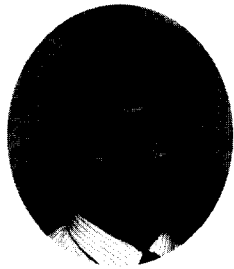
V. 결론

산업재산권이 이제는 추상적 개념에서 벗어나 실질적 재산권으로 자리잡고 있는 현 상황에서도 여전히 이의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합당한 가치를 부여하는 풍토는 아직도 부족하다.

기술개발의 중요성은 인식하면서도 많은 비용과 노력으로 개발한 기술의 관리에는 소홀하며 특히 기술개발 전 단계에서의 이러한 관리자료의 활용은 더욱 미흡한 실정으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기술개발의 동향등 방대한 분량의 기술정보를 면밀히 검색, 분석하여 연구개발의 지표설정 등

연구개발 정책에 활용하는 일은 결코 쉬운일이 아니지만 우리 조선업계에도 뿌리내려야 할 시급한 과제이다.

우리의 조선산업이 빠른 시일내 기술집약산업으로 자리잡고 세계 조선시장에서 건재함을 과시하고있는 일본이나 후발 조선국으로 빠르게 추격해오고 있는 중국등 경쟁국들과의 치열한 싸움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부단한 연구개발의 노력과 과감한 투자가 뒤따라야 하겠지만 이같은 기술개발의 부산물이자 원천이 되는 산업재산권의 적절한 관리와 활용의 극대화가 필수적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등 인적 물적 투자가 절실히 요구된다.



황인환

- 1955년 9월 21일생
- 1977년 서울대학교 금속공학과 졸업
- 1979년 KAIST 석사(재료)
- 현재 대우중공업(주) 선박해양기술연구소 기술관리팀장/부장